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은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03
----------	------

발의연월일 : 2026. 3. 6.

발의의원 : 양은숙 의원,

김보경 의원, 이연숙 의원

1.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국가자격제도인 '아이돌봄사'로 정비하는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여, 달성군의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정의 인용 조문 명확화(안 제2조)
- 나. 중복 규정 삭제(안 제5조)
- 다. 위탁 규정 등 조문 정비(안 제6조~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수”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을 “지원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위임·위탁)”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관·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을 “법인·단체 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법 시행규칙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서비스제공기관”이란 <u>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u></p> <p>5. “아이돌보미”란 <u>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u>을 말한다.</p> <p>제3조(군수의 책무) <u>군수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5. “아이돌봄사”란 <u>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u>을 말한다.</p> <p>제3조(군수의 책무) <u>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 -----</p>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생략)
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3. 4. (생략)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제5조(아이돌보미 처우개선) 군수는 아이돌보미의 수당 등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임·위탁) ① 군수는 효

-----.

제4조(지원사업) ① -----

-----.

1. (현행과 같음)
2. 아이돌봄사-----
3. 4. (현행과 같음)

② -----

----- 지원할 -----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제>

제6조(위탁) ① -----

을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
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
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
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
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아이돌
봄서비스 운영 사항에 대해 아이
돌보미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보
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
사업 안내 지침」, 「지방자치
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
금 관리 조례」 등의 관련 규정
을 따르거나 준용한다.

----- 법인·단체 등에
계 -----.

② -----

----- 법 시행규칙을 따르
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
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
례」 -----.

<삭 제>

제8조(준용) 이 조례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
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

□ 「아이돌봄 지원법」(2025. 4. 22. 일부개정, 2026. 4. 23.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아이돌봄사의 자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1.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3. 성희롱 예방 교육
4. 아이돌봄사의 인성함양
5.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교육

6.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적성·인성 검사 및 제7항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현재 시행 중인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사업의 경우 연평균 1억원 미만의 사업비가 예상됨.

(단위:천원)

연도	지급액	실적	비고
2025	74,730	· 월평균 181명 지원	
2024	65,820	· 월평균 162명 지원	
2023	34,860	· 월평균 145명 지원	'23.6.~12. 기간중 지원

작성 자

소속 및 직위

달성군의회 의원

성명(연락처)

양은숙 (☎ 2048)